

2025. 7. 7

사건번호 2025고합60

피고인 정윤석

최후 진술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난 20년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아오고 있으며, 기록자이자 예술가로서 이 사회의 진실과 갈등들을 정직하게 마주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삶의 변호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소명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후 진술 자리입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노무현 서거, 박근혜 탄핵,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작품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진실들을 기록해왔습니다. 12·3 계엄 사태는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제가 촬영한 자료들은 JTBC, 한겨레, Cine21 등 주요 언론에 제공하였고, 우리 사회가 그 역사적 순간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재판장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목격하고 촬영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출발점은 같았지만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목격한 JTBC 기자들은 보도상을 수상했고, 저는 지금 피고인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저는 1월 19일 새벽 3시 43분에 서부지법 현장에 도착하였고, 로이터, YTN 기자들과 함께 법원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경 법원 내부에서 울렸던 굉음을 듣고 후문에 진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들로 비춰 볼 때 저의 행위는 침입이 아닌 정당한 취재 활동의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체포 당일 담당 수사관에게 예술가라는 신분과 촬영 과정 그리고 JTBC 특집 다큐멘터리 「내란 12일 간의 기록」에 참여한 공식 크리딧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영화인 긴급 연대 서명 뉴스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6,400여 명의 영화인들이 함께 한 연대 서명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도 저를 강제로 유치장에 수감한 뒤 80시간을 구금하였습니다.

외부와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죄목이 변경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혐의가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술가의 손에 직접 수갑을 채웠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7조 2항에 위배되는 '국가기관의 예술가 권리침해' 사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석방 후에도, 검찰은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6월 미국 언론인 마리오 게바라는 미국 이민세관단속청(ICE) 시위를 취재하다가 불법 집회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에도 구금되었다는 점에서 본 사건과 강한 유사성을 가집니다. 디캘브 카운티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든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영상 증거를 근거로 게바라가 법 집행 지시를 따랐고, 그가 범죄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달랐습니다. 행위의 목적성이 아닌 단순 침입 행위를 기반으로 다른 폭도들과 함께 처벌하는 '공동정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공소장의 사실 관계는 차치하더라도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무리한 기소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자,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 "양형의 문제일 뿐", "JTBC는 기소하지 않을 계획"이라 검사는 답변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이 언론사와 예술가에게 상반된 법적 기준을 적용한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법 집행이며, 「예술인권리보장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재판장님,

저는 박근혜 정권 시절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예술가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검열 조치로 제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국가 권력에 의해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2025년 4월 15일 박찬욱, 김성수 감독님 등 15,000여 명의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성명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21조 넷, 영화인연대 등 총 220개의 시민 단체가 동참했습니다.

그 중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는 “동시대 국가적 위기를 기록하는 책무를 지닌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예술가가 반헌법적인 극우세력일 수 없다”고 호소하셨으며, 김근태 재단은 “국가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거는 역사적 판결을 부탁드린다”라고 탄원서를 제출하셨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사태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법치주의와 우리 사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시위를 주도했거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들은 과거에도 공권력 집행에 폭력적으로 저항했고, 위안부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생존자를 모욕하는 등 반복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다.

현정 질서를 파괴했던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었습니다. 지지자들은 거리로 나와 ‘Stop the steal’ 구호를 외쳤습니다.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했던 세력들은 시위를 선동하고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는 서부지법 사태가 단순 폭동이 아닌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사건과 비견되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사건임을 방증합니다. 또한 본 사건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표현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가 감독으로서 지켜왔던 원칙과 소신은 모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지킨 예술가로서 소명이 “공동정범”이라는 검찰의 논리로 인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촬영했던 역사적 기록들 역시 이제 범죄 행위로 재정의되었습니다.

2025년 서부지법 사태를 보도한 JTBC의 수상은 역사적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결과적으로 ‘JTBC 보도는 상을 받고 예술가는 왜 처벌받는가’라는 이분법은 본 사건의 진실을 가립니다.

처벌이 아닌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술가는 왜 역사적 기록 앞에서 차별받고 배제되어야 하는지, 헌법적 가치인 예술의 자유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서부지법 사태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부합하며 예술가의 권리 증진에 있어 큰 기준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반 년간 저를 향한 수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일부 공동 피고인 측은 저를 '빨갱이', '프락치'로 매도하며, 재판부의 공정성을 훼들려고 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에 대한 허위 정보와 모욕적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자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판장님의 지휘를 존중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채우고, 극우 세력들의 공격들이 이어져도, 저는 언제나 원칙과 절차를 지켰습니다.

그 힘의 근원에는 결국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만들어내는 일, 그것이야말로 모든 예술가들의 소명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처음 법정에 섰던 날의 침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고요함이 아름다웠던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최후 진술을 준비하며 수많은 판례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단지 법의 언어가 아닌, 재판관 한 분 한 분의 철학과 신념, 그리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재판부의 깊은 배려와 공정한 기회를 통해, 저는 예술가로서 다시 질문하고, 사유하며, 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법은 절차적 정당성 위에 세워지며, 우리가 그 과정을 존중할 때 공동체의 양심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 그리고 예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술가는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말하며, 기록하는 역사의 파수꾼입니다. 예술가에게 '표현'은 단순한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담보하는 인권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 신념과 실천이야말로 저를 예술가의 삶으로 이끈 원동력이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다시금 카메라를 들게 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예술가의 양심을 '블랙리스트'로 만들고,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 법정에 세웠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조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4조는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예술인은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 사회 전반을 풍요롭게 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에 피고인 정윤석(사건번호 2025고합60)은 예술가의 표현과 사상을 형사 처벌하려는 검찰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최후 진술합니다.

"예술가는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유죄를 주장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마지막 문장으로 남기며, 피고인으로서의 소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깊고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7일

피고인 정윤석 드림.